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20. 12. 10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
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

안형환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1 서면회의 사유

o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4조(서면결의) 및 제14조의2(서면보고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, '다', '라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·반복적 안건에 해당하며, 보고사항 '가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하는 안건임

2 의결사항

- 가.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20-68(서)-296)
-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㈜새빛넷, 현대유선방송사, 양산유선방송사, 심천유선방송사, ㈜미금유선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- 나. 「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고시 제정에 관한 건 (2020-68(서)-297)
- o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'20.12.10 시행)」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」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※ 제정안 주요내용
 - ·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: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,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, 피해의 정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여 3단계(매우중대-중대-보통 위반행위)로 구분하고,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·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 방지 노력 정도,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50%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·감경

다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20-68(서)-298~306)

o 「방송법」제73조제1항, 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, 제59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㈜조선방송 등 9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㈜조선방송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의2제4항제2호	2,000만원
㈜동아티브이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가목	1,500만원
포항문화방송(주)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1호나목	750만원
(재)시민방송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가목	900만원
㈜기독교복음방송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가목	1,150만원
㈜CMB대전방송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다목	500만원
㈜에스티엔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나목·다목	1,100만원
㈜법률방송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나목·다목	2,550만원
㈜광주문화방송	「방송법」제73조제1항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1항	750만원

라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20-68(서)-307~309)

o 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㈜엠비씨플러스 등 3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㈜엠비씨플러스	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
(재)기독교방송	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
울산문화방송(주)	「방송법」제74조제2항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제9조제5항제2호	350만원

③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의 재검토 기한 만료('20.12.31)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'20.12.31에서 '23.12.31로 3년 연장하고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동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